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외에 배전 협력회사에 특별히 구분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공사)

“단위공사”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통보된 건별 공사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무)

계약상대자는 한전이 발행한 시공통보서에 의거 단위공사를 수급, 시공하고 한전은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제4조(단위공사 계약금액)

단위공사 계약금액은 시공통보서상의 공사금액으로 하며 이는 공사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금액에 공량단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단위공사 계약금액”이라 한다)

제5조(시공통보)

① 한전은 단위공사 건별로 시공통보서를 발급하며, 시공통보서를 발급 받은 계약상대자는 시공통보서상의 공사기간내에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통보서상의 준공기일은 지체상금 기산일로 한다.

제6조(공사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단위공사별 시공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사급자재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한전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며 인도후의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에 의하여 한전이 공급하는 사급자재는 포장단위로 출고할 수 있으며, 포장단위 출고에 따른 잉여분 및 환입자재중 사용가능품은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하고 차후 발주자가 공급할 사급자재 물량에서 상계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급자재를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 또는 한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킬 자

재는 당초 출고된 자재와 동등 또는 그 이상품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관자재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자재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시공관리책임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시공관리책임자(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격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한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에 있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공량단가율을 곱한 단가로 한다. 다만, 한전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공량단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한전과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공량단가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공종별 공사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변동전 공종별 공사비단가로 시공지시된 단위공사에 대해서는 최종대가 지급 시 변동된 공종별 공사비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 제비율 산정)

계약상대자가 한전에게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은 공종별 공사비단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 타절준공 및 시공통보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별표13] 「타절준공 상호 협약서」를 제출하고**, 계약만료 연도 11월에 타절준공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개별 시공통보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적기 전기공급 또는 교통안전 등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기 시공통보된 공사를 취소하고 타 협력회사 또는 총액입찰로 전환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사태(전시 등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발생시 한전은 계약상대자에 관할지역(필요시 관할 외 지역 포함)에 대하여 긴급 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기일 내에 자재 및 인력을 확보하여 긴급 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중복낙찰 제한

'25년도 배전 전문회사(계약기간 '25.1.1~'28.12.31, 4년) 계약상대자는 '27년도 배전 협력회사(배전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 등) 낙찰자 선정 시 자동으로 제외된다.

제15조 (인센티브 및 페널티 마일리지의 적용)

'27년도 배전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 계약기간('27. 1. 1 ~ '28. 12. 31, 2년) 중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업무절차서」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마일리지 항목 및 배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절차서에서 정하는 적용일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단, 적용대상은 전기공사협회와 합의된 사항에 한함)

제16조 (공사지연 시 제재 관련)

계약상대자는 신규 전기공급 및 전력설비 이설을 적기에 시공하여야 하며, 분기 1회 한전 영업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영심위)를 통해 협력회사측 사유로 인한 시공지연 여부를 판정하여 페널티(업체당 300점)를 부과한다. 이때 협력회사측 사유로 인한 시공지연 대상이 해당 협력회사 영심위 대상공사의 10% 이상이고 5건 이상인 경우에 한해 페널티를 적용한다. 협력회사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페널티 마일리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페널티 여부를 확정한다. 차기 영심위 결과 모든 지연공사가 해소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인센티브(150점)를 부과하며, 공사 지연이 계속 되고있는 경우 페널티(업체당 300점)를 부과하고, 타 협력회사로 시공통보(미시공 공사, 신규 발생분) 할 수 있다.

【적용 예시】

○ 1차 영심위 대상 40건 중 지연공사 7건 시 페널티 300점 부과(10%↑&5건↑)

○ 2차 영심위 결과

구분	영심위 대상	지연	페널티	인센티브	합산 마일리지	비고
Case1	60건	6건 미만	-	-	300점	계속공사 (일부지연)
Case2	60건	6건 이상	300점	-	600점	타 협력회사 시공통보
Case3	60건	0건	-	150점	150점	계속공사 (지연해소)

제17조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

한전은 동일 공사구역 내 협력회사 간 수주금액 편차 완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수주실적을 분석하고, 협력회사 간 수주금액 편차율이 10% 이상이거나 편차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담 기준금액을 5백만원 단위로 상·하향 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조정된 지역전담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지역전담 기준금액의 구체적인 조정 및 적용 절차, 운영방법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